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
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
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90100228		
최초등록일	2009.05.15	최종등록일	2024.12.11

토즈 정보공개서

[(주)토즈스페이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토즈스페이스

대표번호	02-312-1317	팩스번호:	02-363-1026
가맹사업부서	가맹개설팀	전화번호:	02-6324-1409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1, 9층 20호(서초동, 서산빌딩)		
www.toz.co.kr			

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9.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10. 가맹금 예치기관
11.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 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토즈스페이스의“토즈”)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토즈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일	2024.08.05.		
법인설립등기일	2024.08.05.	사업자등록일	2024.08.02.
법인등록번호	110111-9020910	사업자등록번호	464-88-03193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영권	토즈 외 1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1, 9층 20호(서초동, 서산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권	02-312-1317	02-363-10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김수민(이사) 곽승웅(이사) 권순현(이사) 김형일(이사) 양종문(감사)	토즈 외 1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1, 9층 20호(서초동, 서산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권	02-312-1317	02-363-1026

3.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분할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분할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분할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피투피시스템즈	토즈 패스트카페	2024.10.1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6 810호-8	김영권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토즈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이미지
토즈	토즈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등록번호 4102524320000	
	토즈마이스센터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사항 없음	
	토즈비즈니스센터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사항 없음	
	토즈모임센터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년도의 재무현황

-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년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및 별첨 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해당없음		
2022 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 당사는 2024.8월 설립법인으로써 2023년도 이전의 재무현황이 없습니다.

-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2024.8월 설립되어 이전년도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영권	대표이사	2024.08~현재	(주)토즈스페이스	경영전반
		대표이사	2022.05~2024.10	(주)피투피시스템즈	경영전반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김수민	이사	2024.08~현재	(주)토즈스페이스	이사
		이사	2016.12~2024.10	(주)피투피시스템즈	이사
	곽승웅	이사	2024.08~현재	(주)토즈스페이스	이사
		이사	2016.12~2024.10	(주)피투피시스템즈	이사
	권순현	이사	2024.08~현재	(주)토즈스페이스	이사
		이사	2021.11~2024.10	(주)피투피시스템즈	이사
	김형일	이사	2024.08~현재	(주)토즈스페이스	이사
		이사	2022.12~2024.10	(주)피투피시스템즈	이사
	양종문	감사	2024.08~현재	(주)토즈스페이스	감사
		이사	2022.5~2024.10	(주)토즈스페이스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	-	-

*당사는 2024.08.설립되어 이전연도 말 임직원 수는 없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토즈스페이스	토즈 (20090100228)	2024.10~현재	회의실 운영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토즈스페이스	패스트카페 (20201519)	2024.10~현재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토즈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등록 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상표 (서비스표)		2013.02.21	<u>4102524320000</u>	(주)토즈스페이스	2033.02.21.
권리범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범위 이내 사용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토즈의가맹사업 시작일은 2003 년 11 월 29 일입니다.

2. 토즈의 연혁

토즈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피투피시스템즈	토즈	김윤환	2003.11~2022.5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0-1 (창천동, 즐거운빌딩 9 층)
		김영권	2022.05~2024.10	
(주)토즈스페이스	토즈	김영권	2024.10.~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1, 9층 20호(서초동, 서산빌딩)

3. 토즈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토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서비스	모임센터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토즈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토즈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6	24	2	22	20	2	16	16	-
서울	22	20	2	17	15	2	13	13	-
인천	-	-	-	-	-	-	-	-	-
부산	2	2	-	2	2	-	1	1	-
대구	-	-	-	1	1	-	1	1	-
광주	1	1	-	1	1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토즈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토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26	0	0	2	1	24
2022 년	24	1		5	2	20
2023년	20	-		4	-	16

6. 토즈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가 [토즈]외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가맹 본부	(주)토즈스페이스	토즈	20090100228	회의실 운영업	24/2	20/2	16/-
		패스트카페	20201519	무인카페	23/1	34/1	31/1

*표상의 토즈 및 패스트카페는 당사가 2024.10월에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라고 기재는 하였지만, 그 기재 현황은 이전 가맹본부의 2023년 이전 사항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토즈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 를 기초로 하여 16/16개점의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토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6개	3,886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는 없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광고·판촉 지출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 당사의 광고 및 판촉비 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각 가맹사업과 관련된 광고 및 판촉비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원)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광고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없음
	(비공개)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토즈스페이스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토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약 368,000,000 원(264m² 기준/VAT 포함)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신규 가맹점 최초 가입비	11,0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지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입(오픈)시 소멸되는 비용
교육비	입문교육(용역료)	3,300,000	교육개시 후 반환 불가	소멸성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교육비	입문교육(용역료)	3,300,000	교육개시 후 반환 불가	소멸성비용

나.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5,000,000 (VAT 해당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계	19,300,000
가맹비	11,000,000
교육비	3,300,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토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64㎡(80py)기준, 원, VAT별도)

품목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264 ㎡(80py)	3.3 ㎡당(1py)금액		
인테리어 설비 (철거비별도)	정보 공개서 V-2의 거래 상대방	200,000,000 원 내외	2,500,000 원 내외	가맹 계약시 개별 계약	설치 전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가구		60,000,000원 내외	750,000원 내외		미공급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아트웍		1,000,000원 내외	식		
합계		261,000,000원 내외	3,262,500원 내외	-	-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시 감리비 : 3.3㎡당 330,0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3.3㎡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계약금	50,000,000 원 (예치 가맹금 포함)	8,300,000 원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전체)	가맹계약 체결 시

중도금	총 투자금의 50%	-	착공일
잔금	잔여대금	-	가오픈일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정상 오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다목 예치가맹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다목 예치가맹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다목 예치가맹금의 50%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토즈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행정구역, 시장의 특성, 주요시설, 업종특성, 건물환경(소음, 시설노후문제)에 대해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 또는 제안을 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3) 이외 입점 이후 발생하는 소음 또는 영업방해로 인해 건물주 및 동일 건물내 타 임차인과의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4)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개점전교육 : 필수 수료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개점전 및 운영 중 : 필수 수료	직접 채용이 원칙이며, 개점전 최초 채용시 가맹본부 담당자가 면접 등을 지원함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 3~5]**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운영시스템 사용	가맹본부	포스상 전월 총매출액의 5.5%	매월 10일	후불제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단, 서비스 교육의 경우 1 회당 <u>400,000 원</u> (서울,경기 기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	--	--	--	--	---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온라인상품권 판매	가맹본부	전체 수수료의 50%	개별 청구	유통채널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가능, 유통채널확대, 가맹점별 참여여부는 별도 협의 후 진행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장비,집 기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가맹본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 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 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VII-1 참조
지연 이자	금전 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통신 월 사용료	무선 인터넷 등	개별업체 (점주자율)	업체와 별도 계약	별도 진행	별도진행
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점주자율)	업체와 별도 진행	별도 진행	별도진행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정확한 가맹점 매출분석을 위해 지출내역을 성실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계약 시점의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존 가맹계약의 계약 조건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 중의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토즈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이행보증금(5,000,000원/VAT없음) 및 교육비(3,000,000원/ VAT별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토즈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토즈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토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표 중 선택 항목의 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④ 표상의 구입강제품목이 다른 항목에서 권유/강제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품목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미설치시 반환 항목 : 냉난방, 네트워크 설비, 간판, 급배기 설비 등
 - 미공급시 반환 항목 : 가구(책상/의자), 멀티미디어 장비, 복합기 등
- ④ 상기 품목 중 권유 품목 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되는 경우 구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중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주요 품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토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2023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2023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토즈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상품·용역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상품·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 및 가격은 고객 선호도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래의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회의실 운영업	토즈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정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범위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및 주요 동선을 참고하여 별도 기준 설정 (특정 지명 건물, 사거리 등)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 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 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토 → 영업지역 변경 (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 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신청 이 없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내용으로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 통지 이후 15일 이내 가맹점사업 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 검토 이의신청 사유가 합당한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이의신청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영업지역 변 경(안) 내용으로 영업지역 변경 완료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토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7%	3%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당사는 위 표상의 매출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직영점 기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판매 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영점은 2023년 운영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2023년말 기준 직영점은 없고, 가맹점만 운영하여 가맹점 전용상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토즈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 년입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시 계약기간 2년)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⑤ +15일 이내
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⑦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⑧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갱신비 납부 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갱신시 계약기간 2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갱신비 납부 후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2 항 및 3 항	27 조 각호 및 33 조 1 항 1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등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9조1항 및 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2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3 조 1 항~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3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반복적(3 회 이상)으로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23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4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 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5 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2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9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0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31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2 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2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7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7 조 23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3 조 1 항 2 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3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알려고 상호협의하여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최초가맹금 중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나.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토즈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토즈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회의실 운영업

다.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토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09:00 ~ 22:30 (13시간반)	연중무휴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최소 1인 이상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 방문기록 표에 서명 기록 → 가맹본부 보관 → 가맹점 통보	수시/협의	가맹점 통보 방법 : 구두, 서면 또는 이 메일 등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 방문기록표에 서명 기록 → 가맹본부 보관 → 가맹점 통보	수시/협의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 방문기록표에 서명 기록 → 가맹본부 보관 → 가맹점 통보	수시/협의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통지 (광고1개월 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 및 브랜드파워 재고를 위한 업무제휴 등 통합 멤버십 제도 기획 및 운영 등을 총괄하며, 귀하는 당사가 통합 멤버십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합니다.

* 통합 멤버십 제도에 따른 총당금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귀하는 그 일부를 부담하며, 구체적 분

담비율은 당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그 비율은 50% 이하로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 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위 사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9 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제 20 조(경업금지 의무) 제 1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아래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에는 금 일억원(₩100,000,000),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금오천만원(₩50,000,000) -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금 일억원(₩100,000,000)	
귀하가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항
귀하가 제 33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 일 금오십만원 (₩5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5조 제4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제5항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6324-1409)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 사항 검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7)일 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즉시	
물건조사 및 점포 계약	- 점포입지 분석 및 선정 - 가설계 및 수익성 검토 - 임대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진행	30~60 일 (최대 90 일)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반올림)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14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단, 매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차이 있음	5~6 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7 일	
오픈	- 오픈식(선택사항)	D-day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실내 건축공사에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가맹점 사업자가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에게지급 (단,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3년 이내에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환수 가능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서비스관리, 매출관리,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의 요구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맹점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수시 경영지도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어떠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토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후 2 개월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토즈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7일	3,30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비고
1				
2				
3				

[2023년말 기준 직영점은 없습니다. 2023년 중 2개점이 폐점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헤딩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행당없음	

[별첨] 재무상황

당사는
2024.10.설립법인으로
2023년 이전 재무현황이 없습니다.

[별첨] 거래상대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2024년 10월 18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구입강제품목이 다른 항목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표상의 품목이 기준이 됩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가맹본부가 자체제조를 제외하고는 다과가 있지만 수취가 원칙입니다. 위표에서 자체제조로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